부천원종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11.24.)

1. 건설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93번길 39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LH와 부천원종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건설(주택명 : 부천 브라운스톤 원종)한 주택이며, 전체 137호 중 민간분양주택 109호와 별개로 공급하는 행복주택(26㎡ 21호, 49㎡ 7호)으로**
  금회는 26㎡ 21호만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리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원종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3.12.06.(수) ~ 12.08.(금)	'23.12.15.(금)	'23.12.18.(월) ~ 12.22.(금)	소명대상 개별통보	'24.04.05.(금)	'24.04.16.(화) ~ 04.18.(목)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26A	26.95	13.8602	1.5903	12.3404	54.7409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개별난방	`24.5월 (예정)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우선공급 (10호)	일반공급 (10호)	계	계약금	잔금					
26A	대학생	2	6	41,480	2,074	39,406	186,660	(+) 19,000	60,480	75,820	6
								(-) 34,000	7,480	285,820	
	청년(소득無)	4		41,480	2,074	39,406	186,660	(+) 19,000	60,480	75,820	
								(-) 34,000	7,480	285,820	
	청년(소득有)			43,920	2,196	41,724	197,640	(+) 20,000	63,920	80,970	
								(-) 36,000	7,920	302,640	
	주거급여 수급자	2	2	36,600	1,830	34,770	164,700	(+) 16,000	52,600	71,360	20
								(-) 30,000	6,600	252,200	
	고령자	2	2	46,360	2,318	44,042	208,620	(+) 21,000	67,360	86,120	
								(-) 38,000	8,360	319,450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4년 5월 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부천원종 행복주택[28호(26A 21호, 49B 7호)]은 동일 주택 내 민간분양(109호)과 별개의 임대주택으로, **금회는 26A형 21호만 공급**하며 **동호수 배정은 우리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행복주택 21호 중 1호는 해당 구역 내 기존 거주자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6A형 대학생·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 대학생·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고령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전 세대는 **신발장, 주방가구, 냉장고, 세탁선반, 가스쿡탑(2구형)**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세대 내 중복신청)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024,661 원 이하	120%
2인	5,505,914 원 이하	110%
3인	6,718,198 원 이하	100%
4인	7,622,056 원 이하	100%
5인	8,040,492 원 이하	100%
6인	8,701,639 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및 광명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대학생	부천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

항목	3점	1점
대학생	부모 모두 부천시 및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외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부천시 외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에 거주 (단, 부모 모두 부천시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	부천시에 3년 미만 거주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26A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024,661 원 이하	120%
	2인	5,505,914 원 이하	110%
	3인	6,718,198 원 이하	100%
	4인	7,622,056 원 이하	100%
	5인	8,040,492 원 이하	100%
	6인	8,701,639 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024,661 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3)의 '**예술인**'이란「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 신청자	-

• **순위**

1순위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및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행복주택이 위치한 **부천시**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	부천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부천원종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3000632**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26A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3.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024,661 원 이하	120%
2인	5,505,914 원 이하	110%
3인	6,718,198 원 이하	100%
4인	7,622,056 원 이하	100%
5인	8,040,492 원 이하	100%
6인	8,701,639 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75세 이상	70세 이상~75세 미만	70세 미만~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부천시**에 5년 이상 거주	-	**부천시**에 5년 미만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부천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4.)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천시**에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부천시**에 5년 이상 거주	**부천시**에 5년 미만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부천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부천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3. 12.6.(수) 10:00 **~ 12.8.(금)** 18:00 **인터넷(PC,모바일) 접수** ※ 인터넷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접수] **'23.12. 7.(목)** 10:00~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마이홈상담센터	**'23. 12.15.(금)**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당첨자 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조회'	**'23. 12.18.(월)** **~ 12.22.(금)**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부 부천원종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3.12.22**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접수불가**	**'24. 4. 5.(금)**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	**'24. 4. 16.(화)** 10:00 **~ 4.18.(목)** 17:00 **전자계약**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현장계약] **'24. 4.18.(목)** 10:00~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마이홈상담센터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제출기간 내 해당서류**(공고문 5. 신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및 서류제출안내문 확인 방법◀
  - P 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클릭 →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클릭 → 『청약결과 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3.12.22.(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 당첨자 발표 → 계약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2023.11.24.) 기준 부천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부천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PC)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3. 12. 6.(수) 10:00 ~ 12. 8.(금) 18:00]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하기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계층 및 일반공급 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3.12.6.(수) 10:00 ~ 12.8.(금)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3. 12. 6.(수) 10:00 ~ 12. 8.(금) 18:00]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 다운**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사전준비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공동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계층 및 일반공급 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 청약 건을 PC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 건을 모바일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3.12.6.(수) 10:00 ~ 12.8.(금)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당첨자 확인, 계약내역 조회, 보증금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청약접수 방법 [청약기간 : '23. 12. 7.(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와 [공고문 5. 신청서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접수불가)

현장 청약접수 후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님께서는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 간	**2023. 12. 7.(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장 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마이홈상담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대중 교통편	- **열차** :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출구 (도보 2분거리) - **버스** : 오리역 하차 * 일반버스 : 60, 101, 116-1, 116-3, 300, 37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약 도	 *주차 가능합니다
구 비 서 류	□ **아래 서류와 [5.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사람이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2023.12.15.(금) 17:00 ~)**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 : LH청약플러스 →『청약』클릭 →『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청약』→『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 기한 : **2023.12.18.(월) ~ 12.22.(금)**
  - 제출 서류 : 공고문**(5.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 참고하여 제출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3.12.22.(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 봉투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ex. 홍길동/000000/26A)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부 부천원종 행복주택 담당자 앞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11. 2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붙임1 공사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각 1통 (붙임1 공사서식)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제외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가능**)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붙임1 공사서식)
해당자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발급)**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초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거소사실증명서) 등 추가 제출	1통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각1통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붙임 2 공사서식)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년계층	청년 (19세이상 ~ 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학교
고령자 계층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부(지청) 국가보훈부(지청) 국가보훈부(지청) 국가보훈부(지청)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부(지청) 국가보훈부(지청) 국가보훈부(지청) 국가보훈부(지청) 국가보훈부(지청)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4. 4. 5.(금)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클릭 → 『당첨자조회』클릭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계약안내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전자계약 [기간 : 2024. 4. 16.(화) 10:00 ~ 4. 18.(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가상계좌)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휴대폰 / 공동인증서) → **계약체결** (공동인증서) → 계약서 보관/출력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2024. 4.18.(목) 10:00~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장계약을 진행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시 계약불가)**
  *** 현장계약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마이홈상담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공통서류 (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추가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 모두 지참)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 (단,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소정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배우자 대리계약 시** 공통서류,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배우자 외의 자 대리계약 시** **(인감증명방식)** 공통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4호 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공통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별지4호 공사소정양식)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대학생, 청년 계층</td><td>6년</td></tr>
<tr><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able>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행복주택 입주자는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동일 면적형의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변경하여 갱신)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합니다.
</td></tr>
</table>

<table>
<tr><td></td><td>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td></tr>
<tr><td>신청 서류</td><td>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td><td>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td></tr>
<tr><td>자동차
등록
관련</td><td>

• <u>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u>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td></tr>
</table>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3년의 경우 3,68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 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를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내·외부 여건	■ **단지 내·외부 여건** • 서울시 경계로부터 서측으로 1.5km, 김포공항으로부터 남측 4.0km에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천시 외곽지역으로 대규모 기반시설 접근이 불편하나 지역상권, 재래시장, 개인병원 등 이용이 용이합니다. • 500m 거리에 전철역(대곡소사선 원종역)이 있고,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합니다. • 청약신청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의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외부 여건	• **102동 603호 대피공간은 세대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주변인들에게 상시개방 되어야 하며, 이로인해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 배치로 향별, 동별, 층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 단지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며,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거하여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소방도로, 보행 도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은 건물에 매립되어 설치되며,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인접한 일부 세대의 침실 및 최상층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계단실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 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 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소방도로, 보행 도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도로 및 지상주차장을 제외한 단지 내 차로는 비상용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입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통행로 등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 세대의 경우 입주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관리사무소(☎032-682-345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집적장 설치 위치에 따라 동·호수별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쓰레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소음,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생활피해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접 세대의 경우 차량에 의한 소음, 전조등,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을 위한 전주, 맨홀 신설로 인해 미관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변압기, 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매연, 진동으로 인해 생활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근린생활시설 5대, 아파트 140대 총 145대 입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통로 2.3M, 주차라인 2.1M입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시, 차량의 높이는 2.3m로 제한되며, 2.3m를 초과하는 탑차(택배운송 등)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구조 형식상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불법구조 변경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사용예정인 대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 보일러에 의한 개별 바닥난방이 적용됩니다. • 대피공간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시공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내·외부의 기온차에 의해서 내부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오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관련 사항** • 부천원종 행복주택(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발생되는 초·중·고 학생은 기존 학교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 향후 학급당 학생수 기준, 통학구역 및 학군, 인근 개발계획 등의 수립·조정 등에 따라 학생배치 계획의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오정초, 중학생은 오정·역곡중학군 내 중학교, 고등학생은 부천관내 고등학교로 배치될 예정이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배정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500세대 미만으로 주택성능등급 인증 미대상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천원종 행복주택	부천원종엘에이치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수건설(주)		㈜계림건축사 사무소 ㈜유진씨엔이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동 단지는 준공이 완료(기 입주)되어 계약 후 입주가 바로 진행되는 단지로,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설치항목에 따라 계약자분께서 희망하시는 입주일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계약자가 신청 시 설치)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욕 실	바닥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cm 이상 확대(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 손잡이 설치(L자형, -자형 각1개)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수건걸이 높이조정-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 높이(1 ~ 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주 방	가스밸브 높이조정(1.2m내외)	
	좌식 싱크대(휠체어 및 의자사용 가능토록 설치)	
거 실	비디오폰 높이조정(1.2m내외)	
	야간센서등(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기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24. 4. 16.(화) ~ 4. 18.(목)] 등기우편으로 송부**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붙임3)**는 본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4. 4. 18.(목)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부천원종 행복주택 담당자 앞"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문의처	전 화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인터넷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